

제418회 국회
(정기회)

정보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4년9월26일(목)

장 소 정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 국가정보원 현안질의

상정된 안건

-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2
-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2
-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2
-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3
- 국가정보원 현안질의(비공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신성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정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새로 보임되어 오신 유영하 위원님의 인사말씀을 듣겠습니다.

○柳榮夏 위원 안녕하십니까?

저는 대구 달서갑의 유영하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이 부족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했던 공화정의 요체는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관용과 절제가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토대에서 여러분들 의견을 잘 듣고 보탬이 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유영하 위원님을 환영합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0시03분)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1항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지난 9월 12일 사보임으로 인해 공석이 된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 유영하 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소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소위원회 구성 명단은 끝에 실음)

2.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우리 정보위원회가 2024년도 국정감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국정감사 일정 및 대상기관 등을 정한 국정감사계획서를 채택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정감사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위원 전원으로 구성하고, 국가정보원 등 5개 기관에 대하여 10월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3일간 비공개로 감사를 실시하되 마지막 날인 10월 31일 오후에는 777사령부를 현장 시찰하는 내용입니다.

그 밖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계획서 의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국정감사 계획을 일부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는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양 간사와 협의하여 정하도록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국정감사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

(10시05분)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5개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감사일에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것과 우리 위원회의 서류제출 요구서에 따른 서류제출을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 현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 요구는 위원님들의 요구 자료와 위원회 공통 요구 자료를 같이 해당 기관에 요구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의결 이후에 추가로 위원님들의 서류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에 갈음하여 위원장이 해당 기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위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과 같이 감사 대상 기관에 대하여 보고 및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4년도 국정감사 보고 및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

(10시07분)

○**위원장 신성범**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안건은 국가정보원장 등 18명을 국정감사 기관증인으로 선정하여 해당 기관의 국정감사일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 명단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관증인 18명에 대하여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들어왔습니다.

이기현 위원님 먼저 말씀하시지요.

○**이기현 위원** 제가 매번 말씀드립니다만, 정보위원회 처음 해서 제가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상례적으로, 상식적으로 봤을 때…… 지금 차관급 이상 국가정보원 5인의 정무직 직원들만 증인 채택이 되어 있는데요. 저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실효적인 국정감사가 진행되기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정원에 1급 부서장들이 많습니다만 지방 근무해서 올라오기 어려운 부서장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본부의 부서장들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씀드립니다.

○**위원장 신성범** 박선원 위원님.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장님, 가급적 현재대로 하면 좋겠지만 과거 사례를 보니까 증인선서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부서장이 배석을 해서 답변을 하는 경우에 드리내 놓고 거짓말하는 경우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로서의 기본 도덕과 양심은 존중하지만 굳이 증인으로 채택해서 선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어차피 그 자리에 부서장은 나오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22대 첫 국정감사인 마당에 1급 부서장들, 본청에 근무하는 1급 부서장들은 반드시 증인으로 채택돼야 된다는 의견입니다.

○**김병기 위원** 몇 가지 확인 좀 할게요, 증인 관련해 가지고.

원래 배석을 하지 않나요? 몇 년 동안 당연히 다 배석을 하지 않았나요? 형식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배석하는 부서장들을 전부 증인으로 일괄적으로 하느냐, 다른 위원회의 부처를 보면 참석하는 국장님까지는…… 국정원을 예를 들면 원장이나 차장들, 정무직들께서 답변 못 하는 걸 부서장들이 대신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한 것일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부서장들까지는 보통 다른 부처들도 증인선서를 받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증인선서가 여러 가지 이유로 합의가 안 된다 한다면 그날 당일에 정무직을

대신해 가지고 답변을 해야 되는 부서장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북한정보국장이 답변을 해야 된다 그러면 북한정보국장을 추가로 증인선서를 받고 하는 것은 형식상으로 안 되나요, 전부 다 시킬 필요 없이?

○위원장 신성범 이성권 위원님.

○이성권 위원 저도 정보위원회 간사 또 정보위원회 활동을 처음 해 보기 때문에 과거의 사례나 선례들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통계적으로 보면 지금까지는 주로 국정원장을 포함해서 정무직으로 임명된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증인 채택을 했던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아까 박선원 간사님이 얘기하는 방식, 그러니까 그 발언에 있어서 허위 발언이 있었을 때 책임을 묻기 위해서 증인선서를 받는다는 관점에서 본다면 답변대에 서는 모든 사람들이 증인선서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정무직 5명을 증인으로 채택하는 이유는 이 기관을 대표하는 정무직 책임자기 때문에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것이고 부서의 장들의 답변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정원장을 비롯한 5명이 지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굳이 부서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어제까지 박선원 간사님하고 이 증인 채택 문제를 가지고 거의 한 일주일 간 서로 협의를 해 왔고 최종적으로는 5명이 하기로 결정을 본 상태고 그래서 오늘 자료도 5명으로 정해서 올라왔는데 지금 갑작스럽게 채택을 앞두고 변화된 말씀을 하시니까 약간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박선원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해서 제가 구두로 합의해 준 건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국정감사 때 일부 위원님들의 질문에 대해서 특정 부서를 이야기하기는 그렇지만 과학정보국 같은 경우에 원장님이 다 대답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대놓고 허위 보고 내지는 진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그걸로 끝납니다. 우리는 진실을 대답한다라고 전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는데 증인을 채택해서 선서 못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이성권 간사님께서 굳이 불러야 되느냐 하지만 굳이 안 부를 이유가 없고 현장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채택하자 하는 게 저희 입장입니다.

○위원장 신성범 이 위원님.

○이기현 위원 다시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국회를 바라볼 때 행정부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는 국정감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국정감사가 정기국회 내에 이루어지고 있고 가장 중요하게 국민들이 행정부처의 잘못된 일을 국회가 어떻게 견제해 내는지, 감사해 내는지를 보고 판단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국가정보원이 아무리 정보를 다루는 기관이라고 하지만 국가예산의 대단히 많은 예산을 쓰고 있고 또 그러한 중요한 일을 하기 때문에 1급 이상의 상위 직위자들이 굉장히 많은 포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1급 이상의 공직자를 기관증인으로 채택하지 않는 예를 저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국정원에서도 당연히 그 회의 전체가 공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관증인들이 책임감 있게 발언하고 법률적으로 본인들이 위증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저는 반드

시 1급 이상의 부서장들은 중인 채택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권영세 위원님.

○권영세 위원 권영세 위원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박선원 위원님이 차장으로 계실 때도 국장들은 아마 중인선서를 안 했을 거라……

○박선원 위원 반반입니다. 한 적이 있고 안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안 했을 거라 생각이 되고……

○박선원 위원 한 적이 있습니다.

○권영세 위원 예, 반은 했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면, 김병기 위원님도 이미 알고 물어보셨겠지만 대부분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정보위가 다른 상임위하고 다르다는 데서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지금 외에 특별히 추가로 국장들 까지 다 이름 드러나게 하면서 중인 채택하는 게 과연 옳은가 싶고 저도 국정감사의 대상기관장을 해 봤지만 원칙적으로 사실은 국장이 아니라 장과 최소한 차장 정도가 다 대답을 해야 됩니다.

아주 예외적으로 국장들에게 실무적인 부분에 대해서 물어보기 때문에 김병기 위원님이 예외적인 부분에 대해서 절충안 비슷하게 내셨는데 일단은 중인 결정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차장급대로 유지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신성범 박지원 위원님.

○박지원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시는데요. 이게 국정원입니다. 다른 부서 같으면 해당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박선원 간사가 얘기하는 것처럼 좀 더 정확한 국정 감사를 하기 위해서는 담당자들을 중인 채택하는 것이 옳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성범 유영하 위원님.

○柳榮夏 위원 오늘 처음 와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기 앞에 계신 존경하는 박지원 위원님하고 박선원 위원님께서는 아마 국정원의 원장과 차장으로 재직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공개되는 범위가 국정원은 정무직 다섯 분에 대해서는 얼굴도 공개되고 실명이 공개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중인 채택을 해서 중인선서를 하게 되면 그분들의 실명이 아마 속기록에도 남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정원이라는 게 정보를 다루는 부서 아니겠습니까? 아까 권영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모든 책임은 원장 이하 정무직들이 지시는 거고 그 답변에서 부가설명을 담당 실국장이 하실 때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미흡된 게 있으면 나중에 따로 서면보고로 받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중인선서를 해서 진실성이 담보되느냐? 저는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중인선서를 함으로 해서 중인의 신빙성을 담보하는 데 주안점이 있다고 보면 그럼으로 해서 잃어 버리는 실익은 뭐냐 하면 공개되지 않은 에이전트의 실명이 공개되는 그런 불이익도 저희가 감수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차라리 필요한 자료를 비공개로 서면답변을 받아 보시고 그다음에 그게 미흡했을 때 거기에 따른 정무직을 상대로 다시 추궁하는 게 어떤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선원 위원** 존경하는 위원님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간략하게 설명 겸 보고 올리겠습니다.

아마 예행연습을 아직 안 하고 계실 텐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 정도 남았기 때문에 국정원 내부에서 아직 예행연습을 안 할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정무직만 노출됩니다. 기자들이 사진 찍을 때 정무직만 노출되고 그다음에 1급 부서장들이 배석을 하고 그 상태에서 선서를 할 경우에 이름을 쓰지 않습니다. 부서 이름만 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안에서 전혀 노출되지도 않고 처음에 카메라 들어왔을 때 그때는 정무직만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유영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염려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그러면 지금까지 적어도 정보위원회가 출범한 이후에 국가정보원의 1급 부서장들이 중인으로 채택된 사례가, 국정감사를 몇 번이나 했고 그게 혹시 수석전문위원이나 행정실에 정리된 게 있어요?

○**박선원 위원** 우리 정부 때도 반반 했어요. 조태용 원장님 잘 아십니다.

○**권영세 위원** 94년도부터 이게 시작이 되어서 채택이 된 게 아마 두 번 정도밖에 없을 겁니다.

○**위원장 신성범** 제가 왜 여쭈냐 하면 2021년도와 2020년도에 했던……

○**박선원 위원** 예, 문재인 정부 때 했습니다. 왜 안 하시려고 그래요? 22대인데, 국감인데?

○**권영세 위원** 그때만 하고 그 전에는 안 했습니다.

○**위원장 신성범** 잠깐만요. 아마 안 했던 이유가, 연유가 있을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정보위원장이 22대 국회 초기에 하면서, 정보위원회의 전통과 관행이라는 부분도 있을 터이고 앞에 선배들도 다들 고민해서 이렇게 해 놓은 걸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여기서 표결할 것도 아니고 저는 간사님들 간에 협의가 잘된 걸로 보여지는데 아마 야당 위원들께서는 결국 선서 안 하고 거짓말하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불신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일단 기관증인 18명 정하고 현장 분위기에 따라서 정 마음에 안 드시면 과학이나 기술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나오라고 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계속 여기서…… 표결로 갈 수도 없는 것 아니겠어요?

○**박선원 위원** 그동안 몇 번 이야기를 했었는데 법에 감찰실장을 둘 수 있다 그다음에 감찰 결과를 대통령과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다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고, 그런데 단 한 번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22대 들어와서 감찰이 몇 번 있었는지 제가 대략 압니다. 작년에 대략 몇 번 있었는지 압니다. 안 해요. 법에 있는 것도 안 합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법에 있는 것 하자고 그러면 위원장님이 혼자 보고받으라고 그러시잖아요. 그것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법에 전체회의에서 하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하면서 22대 첫 번째 국감하는데 위원장님 그러시면 안 되지요. 22대 첫 번째 국감에서 한 번 합시다. 그리고 그다음부터 하지 말지요, 그러면.

○**위원장 신성범** 그런데 중인 문제에서 왜 감찰까지 나왔는지……

○**박선원 위원** 아니, 왜냐하면 처음에 내가 이성권 간사한테 감찰실장 넣으라 했는데 그것도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위원장 신성범 잠깐만, 기자들 있습니까?

○행정실장 송환엽 예, 아직은 공개 상황이니까 예민한 건 비공개에서……

○위원장 신성범 잠시만, 이게 약간 우리의 원래 시나리오하고 달라졌는데……

○이성권 위원 제가 한마디만……

○위원장 신성범 한 말씀 하시고 비공개로 넘어가야지 이것 안 되겠다.

○이성권 위원 박선원 위원님이 지속적으로……

○김병기 위원 기사화하지 마시지요. 이게 비공개로 논의되는 거예요. 사실 다 비공개였어야 되는데 이게 사고가 난 것 같은데.

○위원장 신성범 잠깐만, 잠깐만. 위원장으로서 부담스러운데……

이후 진행되는 회의는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국회법 제7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회의 비공개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면 지금부터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관계자 외에는 모두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22분 비공개회의 개시)

(12시14분 비공개회의 종료)

○위원장 신성범 이제부터는 회의를 공개로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과 수석전문위원을 비롯한 위원회 직원 및 속기사 여러분 그리고 국가정보원장님과 관계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산회)

소위원회 구성 명단

소위원회	위원장	교섭단체
법안심사(5인)	박선원	
	위성락 이기현 권영세 ○이성권	더불어민주당(3) 국민의 힘(2)
예산결산심사(5인)	김병기 ○박선원 이인영	더불어민주당(3)
	유영하 이성권	국민의 힘(2)
청원심사(5인)	박지원 박찬대 위성락	더불어민주당(3)

소위원회	위원명	교섭단체
	◎권영세 추경호	국민의 힘(2)

◎표시는 소위원장임

○출석 위원(12인)

권영세 김병기 박선원 박지원 박찬대 신성범 위성락 유영하 이기현 이성권
이인영 추경호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입법심의관 유재근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국가정보원

원장 조태용
제2차장 황원진
제3차장 윤오준

【보고사항】**○위원 개선**

사임위원	보임위원	교섭단체	연월일
김 건	유영하	국민의 힘	2024. 9. 12.

○의안 회부**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8. 30. 임종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424)

9월 2일 회부됨

2025년도 예산안

(2024. 9. 2. 정부 제출)(의안번호 2203519)

9월 3일 회부됨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24. 9. 11. 이달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3927)

9월 12일 회부됨

○행정입법 제출

소관부처	제명	구분	제출일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대통령령	24. 9. 13.